

의안번호	2126314
의 퇴 인	김학용 의원
회 답 일	2024. 2. 14.
추계번호	24F007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
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6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
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에 따라
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1년 5,590억원 등 2026~2031년
까지 6년간 총 3조 1,185억원(연평균 5,19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6년 연장 (안 제24조)	-4,821	-4,965	-5,115	-5,268	-5,427	-5,590	-31,185	-5,198

주: 해당 세수효과는 농어촌특별세 과세(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6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－ (개정안) 2030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을 고려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함
 -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(2024년 12월 31일) 고려 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효과는 2025년 지출·투자분부터 적용
 - 2025~2030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음 해 법인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세수효과는 2026~2031년까지 발생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⁾ 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세액공제의 2023년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 존재하므로,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 -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신성장·원천기술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간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$$\text{세수효과} = C \times \left(1 - \frac{d_0}{d_1}\right)$$

- C : 세액공제액 전망치(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연장)
- d_0 :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
- d_1 :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

-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면액의 20%가 다시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므로, 최종적으로 세수효과 산출 시 이를 고려함

1) 기획재정부, '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', 2023. 12.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시설투자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·원천기술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 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 - (기본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~13%p 우대
 - (추가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%p 우대

[표 2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- (공제실적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023년 기준 7,500억원 수준으로 파악
 -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순

[표 3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및 NABO의 명목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
-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2023~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
 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 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- ※ 2025~2030년은 2024년과 동일한 증감률을 적용

[표 4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...	2030	2031
중소기업	9	9	10	...	12	13
중견기업	10	11	11	...	13	13
대기업	7,299	7,518	7,744	...	8,462	8,715
계	7,318	7,538	7,765	...	8,487	8,742

자료: 한국산업은행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 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15, 중견 15, 중소 25
 -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(%): 대 3, 중견 6, 중소 12

[표 5] 국가전략기술 특례 공제율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: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...	2030	2031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(A)	7,538	7,765	...	8,487	8,742
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(B)	1,513	1,558	...	1,703	1,755
차이 (A-B)	6,026	6,207	...	6,783	6,98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가 다시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되므로, 최종인 세수효과 산출 시 이를 고려함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31년 5,590억원 등 2026~2031년 까지 6년간 총 3조 1,185억원(연평균 5,19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6년 연장 (안 제24조)	-4,821	-4,965	-5,115	-5,268	-5,427	-5,590	-31,185	-5,198

주: 해당 세수효과는 농어촌특별세 과세(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